탑다운(Top down)공법 안전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』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(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따라 탑다운 작업상의 안전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탑다운 공법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탑다운(Top down) 공법"이라 함은 굴착작업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후 1개 층씩 단계별로 지하층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가면서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을 말한다.
 - (나) "지하연속벽(Slurry wall)"이라 함은 안정액(벤토나이트액)을 이용하여 지중에 트렌치(도랑)형태로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지하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말한다.
 - (다) "안내벽(Guide wall)"이라 함은 지하연속벽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트렌치 양측에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가설벽으로서 트렌치 인접지반의 붕락 방지와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하고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.